

할부금융상품 공시기준

1. **(목적)** 이 기준은 세칙 제17조 제1항에 의한 할부금융상품의 종류, 상품별 공시내용, 공시내용 변경주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**(작성책임)** 할부금융업자는 공시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여야 한다.
3. **(공시대상)** 할부금융업자는 자동차, 주택, 가전제품 및 기계류 할부금융상품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4. **(상품별 공시내용)** 할부금융상품별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자동차 : 상품명, 금리, 취급수수료, 실제연율, 연체이자율, 중도상환수수료, 전분기 평균 실제연율*(다만, 실제연율 공시상의 최저치 및 최고치의 차이가 2%p 미만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.), 기타 중요사항
* 직전분기동안 동일조건외의 고객이 실제 적용받은 평균 실제연율을 의미
 - 나. 주택, 가전제품, 기계류 : 상품명, 금리, 취급수수료, 실제연율, 연체이자율, 중도상환수수료, 기타 중요사항
5. **(공시내용 변경주기)** 할부금융상품별 공시내용 변경주기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자동차 : 수시
 - 나. 주택, 가전제품, 기계류 : 매분기 1회 이상